

사업 연도	~	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	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
----------	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1.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

①업태	②종목	코드	③기준 (단순)경비율 번호	수입금액			⑦수출
				④계(⑤+⑥+⑦)	내수	⑤국내생산품 ⑥수입상품	
<101>		01					
<102>		02					
<103>		03					
<104>		04					
<105>		05					
<106>		06					
<107>		07					
<108>		08					
<109>		09					
<110>		10					
<111>기타		11					
<112>합계		99					

2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

(1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

⑧과세(일반)	⑨과세(영세율)	⑩면세수입금액	⑪합계(⑧+⑨+⑩)	⑫수입금액	⑬차액(⑪-⑫)

(2)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

⑭구분	⑮코드	⑯금액	비고	⑭구분	⑮코드	⑯금액	비고
자가공급	21			거래시기차이감액	30		
사업상증여	22			주세·특별소비세	31		
개인적공급	23			매출누락	32		
간주임대료	24				33		
자산 매각	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	25			34		
	그 밖의 자산매각액	26			35		
잔존재고재화	27				36		
작업진행률차이	28				37		
거래시기차이가산	29			⑰차액계	50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작 성 방 법

1.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

- 가. ①업태, ②종목, ③기준(단순)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(단순)경비율의 업태·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,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,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%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<111>란에 "기타"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(단순)경비율번호란은 공란으로 합니다.
- 나.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(별지 제16호서식)상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.
- 다.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.
- 라. ⑦수출란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, 국외제공용역,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 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.

2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

가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

- (1) ⑧과세(일반), ⑨과세(영세율)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(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합니다)을 기입하되,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(2)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합니다.
- (2) ⑩면세수입금액란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.

나.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

- (1) ⑫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,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, 주세·특별소비세, 자가공급,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.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.
- (2)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.